

청주지방법원 2024. 10. 25 선고 2022가단5912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성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진윤기

피 고 C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한규

변 론 종 결 2024. 9. 27.

판 결 선 고 2024. 10. 25.

주 문

1. D와 피고가 2021. 9. 2. 체결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의 보험계약자와 수익자를 D에서 피고로 변경한 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 A에게 50,000,000원, 원고 B에게 16,517,09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D에 대한 각 금전대여

○ 원고 A는 2021. 8. 17.까지 수시로 D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D는 2021. 11월경 원고 A에게 “50,000,000원을 원고 A로부터 차용하였음을 인정한다. 변제할 날짜를 2021. 12. 31.로 한다.”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다만 차용증의 작성일자는 2021. 1. 15.로 기재하였다.

○ 원고 B은 D에게 ① 2013. 10. 20. 2,000,000원을 대여하고, ② 2018. 12. 17. 27,000,000원을 대여하고, ③ 2019. 12. 23.부터 2021. 6. 12.까지 10차례에 걸쳐 24,800,000원을 대여하였다.

원고 B은 D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22가단64429호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법원은 2023. 10. 18. “D가 원고 B에게 수십여 차례에 걸쳐 지급한 돈을 위 각 대여원리금에 총당한 계산 결과에 따라 2021. 7. 29. 최종 지급금의 변제총당으로 위 ①, ②의 각 대여원리금은 모두 변제로 소멸하였고, ③의 대여금 원금 16,517,094원이 남았다.”라고 판단하여, “D는 원고 B에게 16,517,094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9. 3.부터 2023. 10.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D의 재산 처분행위

○ D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에 가입하고 있던 상태에서, 2021. 8. 18. 교통사고를 당해 상해를 입었다(각 보험의 보험사고 발생).

○ D와 피고는 2021. 9. 2. 위 각 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D에서 피고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 피고는 위 각 보험의 수익자로서 2021. 9. 29. 주식회사 E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2항의 나. 기재 보험의 보험금 1,600,000원을, 2021. 9. 29. 및 2021. 10. 14. F 주식회사로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보험의 보험금 합계 77,920,000원을 각 수령하였다(총 수령액 79,520,000원).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 14호증, 을 제9,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

가. 원고 A의 채권

1)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 A는 D에 대하여 ‘대여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변제기 다음날 이후의 지연손해금’ 채권을 보유한다.

2) 피고는 이에 대하여, D는 원고 A에게 2021. 11월경 50,000,000원에 관한 차용증(갑 제2호증)을 작성하여 주기는 하였으나 이는 통정하여 허위의 내용으로 작성한 문서이고, D가 원고 A로부터 실제로 50,000,000원을 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을 제2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는 다시, 원고 A는 D에게 돈을 빌려 준 것이 아니라 도박자금 등으로 송금한 것이고, D는 2021. 1. 30.부터 2021. 8. 17.까지 원고 A에게 총 46,815,000원을 송금하였는바 만약 D가 원고 A로부터 받았던 돈을 대여금이라고 가정하더라도 그 중 위 46,815,000원은 변제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원고 A가 D에게 돈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도박자금 등으로 준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또한 피고 주장의 위 D의 송금 내역은 그 주장 내용 자체로 모두 2021. 11월의 차용증 작성 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이를 위 차용증 작성에 의해 금액과 변제기를 정하여 합의한 차용금의 변제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 A의 위 대여금 채권은 금전대여가 2021. 8. 17.까지 이루어진 것이어서(다만 2021. 11월에 변제할 액수와 변제기를 확정함), D와 피고 사이의 각 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 변경에 관한 계약 전에 발생한 채권이므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원고 B의 채권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 B은 D에 대하여 확정된 청주지방법원 2023. 10. 18. 선고 2022가단64429 판결에 기한 ‘대여금 16,517,09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보유한다. 원고 B의 위 대여금 채권은 금전대여가 2021. 6. 12.까지 이루어진 것이어서, D와 피고 사이의 각 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 변경에 관한 계약 전에 발생한 채권이므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3. 사해행위 해당 여부

가. D의 채무초과 여부

1) 갑 제8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 D는 2021. 9. 2. 무렵 아래와 같은 적극재산을 보유하였다.

* 충남 태안군 H 임야 2,800㎡, 당시 시가 58,800,000원

* 예금, 주식 없음

* 별지 기재 각 보험에 의한 보험금 채권 79,520,000원(나중에 지급된 금액)◎ D는 2021. 9. 2. 무렵 아래와 같은 채무(소극재산)가 있었다.

* 원고 A에 대한 차용금 채무 : 50,000,000원

* 원고 B에 대한 차용금 채무 : 16,517,094원

* I조합에 대한 대출금 채무 : 324,018,228원

* 국세 체납액 : 33,867,190원

2) 그렇다면 D는 2021. 9. 2.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D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별지 기재 각 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피고로 변경한 행위에는 보험금 채권을 양도하는 효과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는 D의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 D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1) 피고는 이에 대하여,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더라도 이는 통모해의에 의한 것이 아닌 한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1)’라면서, D는 피고에 대하여 총 86,5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이를 변제하기 위하여 각 보험의 계약자, 수익자 지위를 피고에게 이전한 것이며, 피고는 채권자로서의 권리 행사 일환으로 그 지위를 이전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금전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는 금전을 지급하는 것이고, 금전이 아닌 다른 재산을 양도하는 것은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가 아니라 ‘대물변제’에 해당하는데,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채권자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 자기 재산으로 대물변제를 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3207 판결 등). 피고의 위 주장은 그 내용 자체로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피고는 또한, 피고는 각 보험금을 수령한 후 그 중 일부는 D의 피고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했고, 일부는 D의 벌금 납부, D의 병원비, 간병비, D의 부탁으로 피고가 대출받은 대출금의 이자 납부, D의 부탁에 따른 D의 지인들에게로의 계좌 이체 등으로 D를 위하여 소비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과 같은 보험금의 사용 내역은 이미 사해행위가 성립한 후의 사정에 불과하고 그 주장 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판단이 달라질 사유가 되지 않는다. 피고의 위

주장도 굳이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사해행위의 취소

D와 피고가 2021. 9. 2. 체결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의 보험계약자와 수익자를 D에서 피고로 변경한 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한편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를 변경한 계약’을 뒤에서 보는 가액배상의 범위 한도에서 일부만 취소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는데, 원칙적으로 취소채권자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는 없는 것이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에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넘어서도 취소를 구할 수 있다²⁾ 할 것인바, 이 사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것은 ‘보험금 채권’과 같이 가분적인 금전채권 자체가 아니라 ‘보험계약자, 수익자의 지위’이므로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5. 원상회복

이미 피고가 사해행위로 이전받은 각 보험의 수익자 지위에 기하여 각 보험금을 수령하여 각 보험계약이 종료된 이상,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각 보험계약자와 수익자를 다시 D로 변경하는 방법을 취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가 수령한 보험금으로 가액배상을 하도록 명하는 방법에 의할 것이다.³⁾

피고는 그 수령한 보험금 총액 79,520,000원(= 주식회사 E으로부터 수령한 1,600,000원 + F 주식회사로부터 수령한 77,920,000원) 중 각 취소채권자(원고들)의 각 채권액 범위에서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는 원고 A에게 위 원고의 피보전채권 중 원금 50,000,000원, 원고 B에게 위 원고의 피보전채권 중 원금 16,517,09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룡

별지

1)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66034 판결 등 참조

2)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등 참조

매각되어 그 저당권설정등기가 이미 말소된 경우'와 유사하다.